

[별지 제4호 서식]

○○○○(세부품명) 규격서

1. 적용범위 및 분류

- 1.1 적용범위
- 1.2 분류

물품분류번호	물품식별번호	규격명	용도	인도조건

2. 적용자료 및 문서

3. 필요조건

3.1 재료

식별번호	규격명	시공 두께/규격치수	()당 자재소요량			비고 (필요시 원산지, 주재료 공급자 등 기재)

- 3.2 형태
- 3.3 제조 및 가공
- 3.4 기능 및 성능
- 3.5 마감 및 외관
- 3.6 기타 사항

4. 검사 및 시험

- 4.1 검사
 - 4.1.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
 - 4.1.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
 - 4.1.3 검사방법
- 4.2 시험방법

시험항목	품질기준	시험방법

5. 포장 및 표시

- 5.1 포장
- 5.2 표시
- 5.3 주기

6. 용도 및 재원 등

- 6.1 용도
- 6.2 발주재원
- 6.3 기타 참고사항

※ 기재요령

- ① 적용범위 및 분류 :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, 형태, 성질·상태와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.
-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: 공공규격인 경우,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 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.
- ③ 필요조건 : 재료, 형태, 제조 및 가공, 기능, 성능, 마감, 외관,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(신기술, 특허, 품질 등)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,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.
- ④ 검사 및 시험 :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⑤ 포장 및 표시 :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⑥ 용도 및 재원등 :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.
- ⑦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,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- ⑧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」 제11조 제1항 [별표1]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의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부품(재료)의 원산지 및 주재료 공급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